

다. 사업추진계획

-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(변경없음)

구역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쌍문제일종합시장 정비구역	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1번지 일대	3,158.3	-

-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건축시설계획(변경없음)
- 입점상인 보호대책(변경없음)

2. 사업추진계획 변경사유

-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단독에서 공동시행으로 변경하고자 함

3. 관계서류 열람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와 도봉구 일자리경제과(☎02-2091-287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5. 기 타

-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97호(2016.9.29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된,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구 미아동 458-1번지 및 미아동 70-7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내 지구단위계획) 변경에 대하여 2016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(2016.9.27.)를 거쳐,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13일
서울특별시

I.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
①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(변경 없음)

지구명	유형	위치	면적(㎡)	지정목적
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	중심 지형	강북구 미아동 70일대 성북구 하월곡동88일대	478,515㎡	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·유통·업무·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,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

2.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(변경 없음)

3.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1) 촉진구역(변경 없음)

2) 촉진계획(변경 없음)

(1) 토지이용계획(변경 없음)

(2)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(3) 정비기반시설 계획(변경 없음)

(4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
(5) 기타사항(변경 없음)

5.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1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
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(1) 최대개발규모(변경 없음)

(2) 공동건축지정 기준(변경 없음)

(3)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가구 번호	획지 번호	면적 (㎡)	획지		공동개발
				위 치	면적(㎡)	
기정	1	1	491	458-1	491	
		2	482	458-8	482	
변경	1	1	973	458-1	491	공동개발(지정) 458-8
				458-8	482	공동개발(지정) 458-1

※ 획지 1-1. 1-2 외의 획지는 변경 없음

(4) 건축물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(5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 분	위 치	결정(변경) 사유	비고
쌈지공지	미아동 458-1	- 쌈지공지 위치 조정 -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기계획되어 있는 공지를 미아동458-1,458-8의 공동개발(지정)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, 미아동 458-1에 위치 변경	

(6) 교통처리계획(변경)

구분	위치	결정(변경) 사유	비고
차량출입 금지구간	미아동 70-7외 6필지, 술샘지구대(860-146)	- 차량출입 금지구간 일부 조정 - 이면도로상에서 해당 대지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의 개설 뿐만 아니라, 이면도로에 접한 필지들이 모두 사업완료(신축)를 통해 건축한계선(1.5m)을 확보 하여야만 실질적인 차량통행이 가능한 여건 반영	오현로

※ 차량출입 금지구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

- 도시계획시설(소로3-7)에 대한 설치 부담주체를 ‘강북구’에서 ‘미아동 70-7외 6필지 소유자(또는 시행자)’로 변경
- 도시계획시설(도로)부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

(7) 준치관리구역 운영지침(변경 없음)

II. 관계도면 : 불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준비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III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거사업과 (☎02-2133-7217)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 (☎02-901-6852)에 관계도서를 준비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○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기정)



○ 재정비촉진계획(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변경)

